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33
----------	-----

2016. 2. 4.(목)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의영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1월 26일

(제34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이의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 목적에 ‘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’ 추가(안 제1조)

○ 위원회의 기능 중 ‘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’ 추가(안 제2조)

- 위원회의 구성 위촉대상자 추가(안 제3조)
 -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-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 추가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오성일)

- ‘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대기업이 대형마트, SSM 등에 무분별한 진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,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소비자 권익증진 시책”을 “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”로 한다.

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
제3조제3항 중 “지역경제와”를 “지역경제, 소상공인과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
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 물가안정 시책,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, 유통·물류시책, <u>소비자 권익증진 시책</u>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<u>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기능)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 <u>(신설)</u></p> <p>8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9. ----- -----</p>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 권익 증진, 유통, 물류, 물가, <u>지역경제와</u> 관련된 실·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제4조 ~ 제7조(생략)</p> <p>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	<p>③ ----- ----- <u>지역경제, 소상공인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6.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</u></p> <p>제4조 ~ 제7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